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민사소송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안 번호	제 337 호
----------	---------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 구 공무원이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되어 예비비를 사용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근거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나. 지급 개요

- 1) 사 건 명: 화물차 불법 증차 관련 손해배상 청구
- 2) 지급일자: 2024. 3. 29.
- 3) 지급대상: 화해권고결정 확정 사건(6건)

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가단43889 손해배상(기)

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가단111203 손해배상(기)

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66248 손해배상(기)

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65771 손해배상(기)

마)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9030 손해배상(기)

바) 부산지방법원 2021가소621986 손해배상(기)

4) 예비비 배정액: 금424,093,079원

다. 예비비 사용 이유

1) 2024년 2월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된 6건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 424,093,079원을 사용함

3. 추진경과

가. 예비비 사용 계획 및 승인요청: 2024. 3. 14.

나. 예비비 배정(기획예산과): 2024. 3. 19.

다. 예비비 집행: 2024. 3. 29.

1) 배정액: 424,093,079원

2) 집행액: 424,093,079원

3) 세부내용

(단위: 원)

사건번호	2021가단 43889	2021가단 111203	2021가단 66248	2021가단 65771	2021가단1 49030	2021가소 621986	합계
배상금액	95,753,120	140,195,470	37,280,747	74,127,375	57,733,823	19,002,544	424,093,079